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4년 9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월 28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www.smba.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청업 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유지필 과장(042-481-1601), 김석동 주무관(1604)

중기청, 4개 지역특구 신규지정 · 변경

– 8,777억 투자를 통해 11,724명 고용창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1개 계획변경 승인하여, 이에 따른 8,777억 원의 투자를 통해 3조 4,322억 원의 생산유발 및 11,72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9월 25일(목) 중진공(서울) 대회의실에서, 「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 3개, 계획변경 1개를 심의·의결하였다. (지역특구 수 : 160개 → 163개)

*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금번 지역특구 신규지정·변경현황>

구분	지역	특구명	사업내용	투자금액(억원)	생산유발(억원)	고용창출(명)
신규지정	충남	홍성유기농업특구	·기반조성 ·유통·브랜드강화	525	995	378
	강원	평창산양삼특구	·기반조성 및 가공산업육성 ·마케팅 및 관광육성	216	343	142
	강원	홍천청정산양삼특구	·기반조성 및 연구·가공·유통강화 ·브랜드 및 관광육성	84	517	1,293
변경	경남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해양플랜트사업 추가 ·명칭,면적,기간,투자액 변경	7,952	32,467	9,911

□ 한편 신규지정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남 홍성유기농업특구**는 2018년까지 총 525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유통활성화 및 공동브랜드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홍성군은 유기농업 인증면적이 693ha로 친환경 농업면적 대비 유기농업 면적비중이 84.9%로 전국 1위임

○ **강원 평창산양삼특구**는 2019년까지 총 216억 원을 투입하여 산양삼 특구 기반조성, 가공산업육성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HAPPY700 평창마케팅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 평창군은 생물 생육환경의 최적조건인 700m에 위치하여 기후, 토종, 고도등 산양삼 재배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강원 홍천청정 산양삼산업특구**는 2017년까지 총 84억 원을 투입하여 청정재배기반조성, 연구·가공·유통 강화사업, 브랜드명품화 사업 및 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 홍천군은 전체면적의 32.33%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오대산 국립공원 등 풍부한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기후, 토양 등 산양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계획변경 승인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남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특구명칭 및 특화사업에 해양플랜트를 추가하고, 특구면적과 사업비 등을 확대·증액하였다.

* 명칭은 '고성 조선산업특구'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3,884,176㎡(증 1,232,465㎡), 사업비는 795,200백만 원(증 190,400백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증 3년)까지 연장

□ 또한, 지역특구위원회는 2013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15개 우수지역특구를 선정하였다.

○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가 대상으로 “부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와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개를 우수상으로,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전남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 “인천 중구차이나특구”, “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 “전북 진안홍삼아토피케어특구” 및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6개를 장려상으로 선정하고, 총 7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포상금은 대상 2억 원, 우수상 각 1억 원, 장려상은 각 5천만 원

○ 부진특구로 선정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지역특구 해제를 검토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라고 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김석동 주무관(☎ 042-481-16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32차 지역특화발전위원회 지정·변경 지역특구 개요

1 홍성 유기농업 특구 (향토자원)

□ 특구개요

○ 위치·면적 :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55-5 번지 외 2,716필지(5,798,315㎡)

○ 특화사업자 / 사업기간 : 홍성군수 / 2014~2018년(5년)

○ 사 업 비 : 524.9억원(국비 71.1억, 도비 85.3억, 군비 196.6억, 민자 171.9억)

□ 사업내용

○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

- 유기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유기질 비료 지원 및 병충해 예방 등),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유기농산물 가공시설 및 기술 지원, 농가교육 및 컨설팅(농업대학 운영 및 韓·日 오리농법 교류 등), 농업인재 양성(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교육 실시 등)

○ 유통활성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사업

- 내수활성화 및 유통지원(직거래장터 개설 등), 학교급식을 통한 유통활성화, 유기농산물 해외수출 개척지원, 브랜드 활용 및 홍보, 지리적 표시 등록, 유기농 관광체험(체험학교 운영 및 축제개최 등)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총 6건의 규제특례 적용(붙임1 참조)

□ 기대효과

○ 전국 최초 오리농법의 발원지이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유기농업 선도지역으로서, 유기농업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화전략은 국가창조경제 실현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총 사업비 525억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는 99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8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78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붙임 | **「홍성 유기농업 특구」 적용특례 (6건 / 일반 5건, 권한이양 1건)**

사업		적용특례	필 요 성	적용범위
특화	세부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유기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26조	유기농산물생산 확대를 위해 농지의 위탁 경영, 임대·사용대 기준 완화	특구지역 내 유기농산물 재배 농지
	유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43조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 다른 지역 제품과의 차별성 강화	특구지역 내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홍보·안내문구 적용
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유기농 관광체험 연계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22조	축제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 제한	홍동거리축제 및 홍성오리쌀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행사장(홍동면 애향공원, 문당리 일원-지방도 609호선 및 군도 3호선)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33조	축제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판매점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용	홍동거리축제 및 홍성오리쌀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행사장(홍동면 애향공원, 문당리 일원-군도 3호선, 광금남로 699번길)
	지리적표시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36조 5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기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 심사	특구지역 내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시 적용
	내포천애 공동 브랜드 활용 및 홍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23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물의 종류, 모양,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제·개정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에 공동브랜드/특구지정 관련 지주이용 간판 1개소 설치 *가로x세로x두께 : 5m×10m×1m 높이 : 10m

2 평창 산양삼 특구 (향토자원)

□ 특구개요

○ 위치·면적 :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외 42필지(4,282,476㎡)

○ 특화사업자 / 사업기간 : 평창군수 / 2015~2019년(5년)

○ 사 업 비 : 216억원(국비 22억, 지방비 37억, 민자 157억)

□ 사업내용

○ 산양삼특구 기반 조성

- 산양삼 재배농가 육성(품질검사 및 제초작업 지원 등),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 생산자단체 법인 설립·운영

* (생산자단체 법인) 가칭 '평창 산양삼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생산이력제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산양삼 관련 각종 사업을 운영·추진

○ 산양삼 가공산업 육성

- 산양삼 생산이력제 실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 산양삼 가공시설 지원(위생·기능성 제품 생산시설 등), 산양삼 연구개발(식품·대체의약·뷰티제품 개발), 평창산양삼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 (클러스터 사업단) 농가·업체·지역대학·연구소·평창군이 연계된 산양삼 전문 사업조직

○ 산양삼 HAPPY700 마케팅 사업

- 동계올림픽 연계 산양삼 마케팅 강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평창 HAPPY700 힐링투어 운영, 산양삼 특구 홍보(홈페이지 개설 등)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총 4건의 규제특례 적용(붙임1 참조)

□ 기대효과

○ 총 사업비 216억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는 34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2명**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

붙임 「평창 산양삼 특구」 적용특례 (4건 / 일반 3건, 권한이양 1건)

특화사업	적용특례	필 요 성	적용범위
산양삼특구 홍보 사업	제23조 1항, 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구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 완화	특구내 지주이용 간판 설치 (별도의 조례 개정)
산양삼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 산양삼 연구개발사업	제36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특화 사업으로 생산되는 산양삼과 이를 원료로 한 산양삼 가공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를 통해 평창 산양삼 브랜드 조기 확보	평창군 특구 생산 산양삼과 산양삼가공제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산양삼 연구개발사업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산양삼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되는 산양삼 시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적용으로 시장 조기 선점 및 농가소득 증대 모색	산양삼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산양삼 시제품
산양삼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 산양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산양삼 연구개발사업	제43조 1항 (식품위생법)	특화사업을 통하여 출하 및 제조되는 평창 산양삼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평창군 산양삼 제품의 브랜드 파워 제고	평창 산양삼 특구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관련 모든 제품

3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향토자원)

□ 특구개요

○ 위치・면적 :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175외 176필지(10,031,878㎡)
○ 특화사업자 / 사업기간 : 홍천군수 / 2014~2017년(4년)
○ 사 업 비 : 83.67억원(국비 30억, 군비 41.47억, 민자 12.20억)

□ 사업내용

○ 청정 산양삼 재배기반 조성사업

- 산양삼 품종개발(산양삼 유전자원 수집, 품종보급원 조성 등), 산양삼 재배기술 개발(재배기술 및 배양토 개발, 재배임가 기술애로 자문), 재배환경 조성(공유 재배지 임대차 지원 등)

○ 연구・가공・유통 강화사업

- 기능성 신소재 개발 지원(식품・의약품・화장품 연구, 창업 및 기업유치 등), 산양삼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 지원,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산양삼 유통센터 조성**

* (농업회사법인) 재배임가를 주축으로 설립, 배재기술 보급, 관광상품 개발 등 특화사업 전반관리
** (산양삼 유통센터) 현 홍천군 산림조합 시설(대지 1,456㎡・건물 연면적 716.4㎡)을 활용, 산양삼 공판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

○ 브랜드 명품화 사업

- 공동브랜드 및 이미지통일(CI・포장디자인 등 개발), 브랜드 마케팅

○ 체험관광 사업

- 체험마을 조성 및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 산양삼 축제 개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총 8건의 규제특례 적용(붙임1 참조)

□ 기대효과

○ 총 사업비 84억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는 517억원, 소득유발효과는 10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293명**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

붙임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적용특례 (8건 / 일반 7건, 권한이양 1건)

특화사업	적용특례	필 요 성	적용범위
브랜드 명품화 사업	제23조 1항, 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역특구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특구 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홍보용 지주이용간판 설치
관광·체험 사업	제25조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추진
연구·유통·가공 강화사업	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산양삼 판매 및 유통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용 및 허가절차 완화	지방도매시장 개설
청정재배단지 조성, 산양삼 유통센터 사업, 산양삼 체험마을 및 편의시설 설치	제36조의 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홍천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규제특례 적용 홍천군 군유림
연구·유통·가공 강화사업	제36조의 3 (주세법에 관한 특례)	특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구의 농업인, 임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를 제조할 경우 면허취득 절차 완화	특구 내 임업인 등이 주류 제조면허 취득
지리적표시 등록 사업	제36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산양삼에 대한 브랜드파워 조기 확보를 위해 산양삼 및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시 우선 심사	산양삼 및 가공제품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브랜드명품화 사업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산양삼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각종 특화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산양삼 시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연구개발에 따른 산양삼 제품 특허출원
품질관리체계구축, 유효성 인증사업, 공동브랜드 및 이미지 통일 사업	제43조 1항 (식품위생법)	산양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산양삼 제품의 표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표시문구 적용

4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산업연구, 계획변경)

□ 특구개요

○ 위치 및 면적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2,651,711㎡**)

○ 총사업비 : **6,048**억원(전액 민자) / 사업기간 : 2007년~**2015년**

○ 주요사업내용

구 분	사업자	사업비	면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내산지구	삼강엠앤티(주)	1,010억	223,318	'07~'15	조선기자재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주)	4,300억	1,920,492	'07~'15	중대형특수선박
장좌지구	고성조선해양(주)	738억	507,901	'07~'15	중소형선박, 조선기자재

□ 계획변경의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조선산업특구 → 조선해양산업특구(**해양플랜트 사업추가**)

○ 면적 확대 : 2,651천㎡ → 3,884천㎡(**증 1,232천㎡**, 매립 206천㎡ 포함)

○ 사업 기간 : '07년~'15년 → '07년~'18년(증 **3년**, 양촌·용정지구 제외)

○ 투자 증액 : 6,048억 → 7,952억원(**증 1,904억원**, 전액 민자)

○ 특례 추가 :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을 위한 구역 해제), 郡관리계획결정 의제(매립예정지 등을 일반공업지역 지정) 등

□ 기대효과

○ 고성군에서는 '20년까지 **32,46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76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911명의 고용유발** 등 발생할 것으로 추정

붙임 「고성 조선산업특구」 적용특례 (3건 / 일반 5건, 권한이양 1건)

구분	적용특례	특례사항 세부내용	적 용 범 위
일반적 규제 특례 사항	특구법 제3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1항 및 제5항	○내산지구와 장좌지구의 확장에 따른 특구계획(변경)에 포함된 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정·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	특구법제39조 제1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중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내산지구 및 장좌지구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예정지 : 일반공업지역 지정 ○장좌지구 육지부 추가편입지 : 일반공업지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내산지구 및 장좌지구 기정 특구부 :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 폐지)*
	특구법 제39조 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내산지구 및 장좌지구의 추가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예정지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 추가해제)
비고	1. 기존에 장좌지구 및 내산지구에 적용되던 **기존 규제특례는 유지**하되, 기존에 적용되던 규제특례는 **신규로 확장되는 구역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존 규제특례 ⅰ) 특구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특구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 ⅱ) 특구법 제31조제1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특례) : 특구에 편입된 토지상의 타인 분묘 개장을 위한 사전 통보기간을 3월에서 2월로 단축 ⅲ) 특구법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 : 특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사용·수용 가능 2. 내산·장좌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효력이 상실된 내산·장좌지구의 제2종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폐지함	

참고2 2013년 운영실적 우수 지역특구 현황

□ 대상

○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2009. 10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국 전복생산량의 약 8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생산지로 최적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품질혁신, 제품다양화 및 마케팅강화로 완도 전복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생 산 량 : ('11년) 7,400톤 → ('12년) 7,400톤 → ('13년) 7,610톤
  * 전복생산액 : ('11년) 4,700억원 → ('12년) 4,700억원 → ('13년) 4,790억원

□ 우수상

○ 부산 금정문화예술특구(2012. 12월 지정, 교육)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양성 등 교육경쟁력을 높여 교육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창의 및 특화도시의 역량과 위상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규일자리창출 : ('13년) 191명
  * "평생학습도시" 지정(13.7월,교육부),전국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우수"(13.8,고용부)

○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2005. 4월 지정, 산업연구)

- 첨단의료산업단지 육성의 효과적인 홍보와 특구지역내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및 병원을 유치하여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규일자리창출 : ('11년) 117명 → ('12년) 143명 → ('13년) 165명
  * 생산매출액 : ('11년) 4,083억원 → ('12년) 4,289억원 → ('13년) 4,955억원

□ 장려상

ㅇ 전남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 (2009. 5월 지정, 관광레포츠)

- 청자박물관 등 청자관련시설과 강진 청자축제 등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려청자문화의 부흥을 도모하여 지역브랜드를 강화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253억원 → ('12년) 278억원 → ('13년) 335억원
  * 특구방문객 : ('11년) 2,307천명 → ('12년) 2,542천명 → ('13년) 2,613천명

ㅇ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2011. 4월 지정, 산업연구)

- 특구주변에 부품소재업체가 집적화 되어있고 국내 셀·모듈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산업거점으로 R&D, 인력양성 및 체험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139억원 → ('12년) 573억원 → ('13년) 1,300억원

ㅇ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2007. 4월 지정, 관광레포츠)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풍 공원, 문화시설 등을 기반으로 인근의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77억원 → ('12년) 139억원 → ('13년) 252억원
  * 특구방문객 : ('11년) 2,492천명 → ('12년) 2,809천명 → ('13년) 2,699천명

ㅇ 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2007. 9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국내 유일의 씨 없는 감(청도반시)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생산·가공·유통·전시체험 뿐만 아니라 와인터널을 이용한 관광사업, 감물염색 마케팅 및 가공품 해외수출, 청도 반시축제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간생산량 : ('11년) 41,535톤 → ('12년) 47,618톤 → ('13년) 43,544톤
  * 특구방문객 : ('11년) 230천명 → ('12년) 507천명 → ('12년) 526천명

ㅇ 전북 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2005.12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체 농가수의 20%가 인삼 및 약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국내홍삼의 35%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홍삼·약초에 대한 가공·판매시설을 개선하며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781억원 → ('12년) 811억원 → ('13년) 858억원
  * 특구방문객 : ('10년) 815천명 → ('11년) 1,039천명 → ('12년) 1,245천명

ㅇ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2004.12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통적인 장류산업 대표지로서 장류분야의 육성·지원체계를 형성하여 장류제조업체를 육성하며 발효식품의 보전 및 육성을 통해 발효기술의 교육지로서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 ('11년) 476억원 → ('12년) 568억원 → ('13년) 669억원

□ 중소기업청 청장상

ㅇ 광주 남구문화교육특구 (2011.12월 지정, 교육)

- 전통문화인 고싸움놀이 계승과 양림동 역사마을 만들기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성 등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및 100여 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교육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역사문화관광 방문자수 : ('12년) 173천명 → ('13년) 175천명
  * 도서관 조성 등 문화교육 인프라 조성 : ('12년) 7개소 → ('13년) 8개소

ㅇ 전남 화순백신산업특구(2010. 11월 지정, 산업연구)

- 화순지역은 생물의약연구센터, KTR 헬스케어연구소, 화순전남대병원, 녹십자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연구개발(R&D)·전임상(GLP)·임상(GCP)·의약품제조(GMP) 전과정이 원스톱 처리되는 국내 백신산업의 메카로써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

  * 매출액 : ('11년) 2,758억원 → ('12년) 2,827억원 → ('13년) 3,278억원
  * 수출액 : ('11년) 150억원 → ('12년) 168억원 → ('13년) 421억원

○ **경북 성주참외산업특구**(2006. 2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참외생산 및 가공품을 개발하고 도매시장건립 등 유통시설 확충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관광객유치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가매출액 : ('11년) 3,570억원 → ('12년) 3,989억원 → ('13년) 3,820억원
* 참외수출량 : ('11년) 66톤 → ('12년) 134톤 → ('13년) 159톤

○ **경남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2005. 4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면적의 78%이상이 산지인 지형적 약점을 명품약초 재배의 최적지라는 강점으로 승화시켜 한방약초밸리 조성, 한방 가공상품 및 휴양·관광·치유를 겸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약초를 이용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 ('11년) 692억원 → ('12년) 836억원 → ('13년) 1,340억원
* 일자리창출 : ('11년) 47명 → ('12년) 425명 → ('13년) 5,687명

○ **충북 제천약초웰빙특구**(2005.4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국 최고수준의 한방인프라시설을 활용한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해외수출상담회 및 해외 한방관(중국) 개설 등을 통해 제천 약초를 널리 알려 한방특화도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유통·마케팅의 촉매 역할로 약초농가와 한방업체에 기여

* 특구방문객 : ('11년) 155천명 → ('12년) 710천명 → ('13년) 947천명
* 유치기업수 : ('11년) 6개 → ('12년) 16개 → ('13년) 21개

○ **전남 보성녹차산업특구**(2007.9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국 녹차 재배면적의 34%,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로서 녹차생산·가공을 위한 기반시설구축과 녹차재배·체험등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 ('11년) 624억원 → ('12년) 781억원 → ('13년) 800억원
* 특구방문객 : ('11년) 910천명 → ('12년) 1,195천명 → ('13년) 1,307천명

참고3 지역특구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역이 특색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03.6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공공기관 지방이전, R&D 지방지원 비율확대 등)중 하나

○ '04.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이후 세 차례('06.10, '09.4, '11.5) 개정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

*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특례(61개), 토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의제(53개), 지자체장에 행정권한 이양(15개)

□ 특구지정은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 특례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역특구를 지정·고시**

□ 지역특구제도는 규제특례 이외 재정·세제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 **타 유사제도와 차별화**

○ 다만, 중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정책 수립시 **지역특구의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법 제14조제5항)

* 농촌활력증진사업·원예과수브랜드육성지원사업(농림식품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

2. 지역특구 지정절차

○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청장이 지정·고시**

- 지역특구 위원회는 중기청장(위원장)을 포함 **관계부처 가등급 고위공무원 15인**과 분야별 전문가 **민간인 10인이내**로 구성

- 지역특화규제개선과는 지역특구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 기능과 지자체의 지역특구계획 수립에 자문역할을 수행

< 지역특구 계획수립 절차(지자체) >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공고(20일이상)

※ 특구계획안 : 대상지역 및 면적, 사업자, 사업내용, 규제특례 내용 및 적용 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 가격안정 방안,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

지역특화 사업자 지정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후부터 30일내 결정)

※ 민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구지정 이후 선정 가능(계획변경)

↓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 열람(공고 6일이후) 및 주민 의견청취

↓

주민 공청회(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공고)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지자체)

<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중기청) >

지역특구 지정 신청(지자체 ↔ 중기청)

· 지역특구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서류(자료) 보완·추가 제출요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중기청 ↔ 환경부)

·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등)

↓

관계행정기관 협의(중기청 ↔ 관계행정기관)

·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1차에 한해 10일 범위 협의 연장가능)
* 기간내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

↓

지역특구 실무위원회(위원장 : 중기청 차장) 협의

· 관계행정기관 협의가 끝난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
(위원회 안건상정 전 사전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조사항 정리

↓

지역특구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지역특구위원 중 민간위원)

· 안건별로 지역특구의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검토

↓

지역특구 위원회(위원장 : 중기청장) 심의·의결

·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과의 적합성
·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민자 유치 가능성 포함)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주민 등의 의견
· 사업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 기타(실행가능성, 차별성,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등)

↓

지역특구 지정·고시(중기청)

· 중기청장은 관보에 특구지정 고시(특구계획 승인, 특화사업자로 지정으로 봄)
·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결과를 주민열람(14일 이상)
* 지자체장은 지역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할 수 있음

↓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중기청)

·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특구를 선정
· 평가결과 지역특구제도개선에 반영

3. 제도운영 현황

□ '14. 3월 현재 **120개 지자체**에 **160개 지역특구 지정·운영중**

○ '04. 12월 최초 지정 이후 '09년부터 **연평균 10여개 내외**의 지역특구를 신규지정

년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	'10	'11	'12	'13	'14	합계
특구 수	6개	33개	29개	24개	22개	14개	11개	8개	3개	5개	5개	160개

○ 초기 농수산, 특산물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2·3차 산업**(제조업, 에너지, 관광 등)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추세

* 향토자원유통물류(75), 관광레포츠(40), 교육(25), 산업연구(17), 의료복지(3)

○ 전남(32개), 경북(26개), 충남(16개), 충북(15개), 전북(13개), 경남(12개), 경기(12개), 강원(10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고루 활용

□ 현행 129개 규제특례 중 **65개 규제** 총 676회 적용되어 **지역특구당 평균 4.2개**의 특례가 적용

○ 규제특례別로는 옥외광고, 도로통행, 농지의 임대 등 **일반특례**, 농·산지 전용,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 특례**, 식품표시기준 등 **권한이양 특례**가 주로 활용

□ **총 11조 9,724억원의 재원이** 160개 지역특구의 각종 특화사업에 투입될 예정 ('14년도 기준)

○ 이 중 **민자가 5조 6,492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47.2%를 차지 ('14년도 기준)

('14년도 기준)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합계
억원(비중)	24,749(20.7%)	12,083(10.1%)	26,391(22.0%)	56,492(47.2%)	119,724(100%)

4. 지역특구 지정의 효과

① 개별법의 적용 배제 및 별도 규정 적용(특례)

○ 각 개별법에 정한 규제의 특례(적용배제 및 완화)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함

* 例) 지역특구 내 敎員을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 옥외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 등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함 등

② 각 부처 예산산업에 인센티브(부분적)

○ 농림부의 "농촌활력증진사업, 브랜드육성지원사업(원예·과수·밭작물 등)" 및 문광부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의 참여시 우대

③지자체의 업적 홍보

○ 지역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구의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지자체장의 업적으로 홍보

④ One-Stop Service 제공

○ 신청단계의 내용이기는 하나, 지자체장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시는 각 개별법상의 해당기관의 허가 등을 일일이 받아야 하나, 지역특구의 신청으로 중기청에서 각 부처를 상대로 일괄 처리

< 주요 경제적 성과 >

○ 2012년 151개 지역특구에서 기업 매출액, 농가 등 주민소득과 지역축제(관광) 수입 등 9조 1,683억원의 소득이 발생

- 누계 201,751명의 고용 창출('10년 38,212명, '11년 38,378명, '12년 26,354명)

- 누계 8,538개의 기업 유치('10년 2,190개, '11년 1,433개, '12년 1,483개)

지역특구 지정 현황

('14. 8월 현재)

□ 연도별 지정 현황

지정년도	향토자원 유통물류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계
2004	2	2	1	1		6
2005	18	7	5	3	2	35
2006	19	5	3	3	1	31
2007	11	5	4	5		25
2008	7	9	4	1	1	22
2009	7	5	1	1		14
2010	5	3	2	1		11
2011	4	1	2	1		8
2012		1	2			3
2013	1	2	1	1		5
2014	3	1			1	5
지정해제	*2*	*1*			*2*	*5*
계	**75**	**40**	**25**	**17**	**3**	**160**

※ 지정해제 : 완주 포도주산업특구('07.9월),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11.12월)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12.5월), 남해 귀향마을 특구('12.12월)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13.12월)

□ 지역별·유형별 지정 현황

유형 / 지역	향토자원 유통물류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계
서 울 (5)	1	1	3		1	6
부 산 (5)	1	3	1			5
대 구 (2)	1			2		3
인 천 (3)	1	1	1			3
광 주 (2)	1		1			2
울 산 (2)	1	1				2
경 기(11)	4	4	1	3		12
강 원 (8)	3	4		3		10
충 북(12)	9	3	1	2		15
충 남(12)	10	1	4	1		16
전 북(9)	5	4		2	2	13
전 남(18)	16	8	7	1		32
경 북(20)	17	5	3	1		26
경 남(9)	4	3	3	2		12
제 주(2)	1	2				3
합계(120)	**75**	**40**	**25**	**17**	**3**	**160**

※ ( )안은 지역특구 관할 기초지자체 수

지역특구 규제특례 적용 현황

('14. 8월말 현재)

구 분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특구수
일반 규제특례 (61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10
	도로통행 제한(도로교통법)	84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농지법)	31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초·중등교육법)	24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35
	기타	205
	소 계(적용특례 39개)	489
토지이용 규제특례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24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법)	21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2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국토계획·이용법률)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이용법률)	11
	기타	29
	소 계(적용특례 20개)	117
권한이양 특례 (15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58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체육시설설치이용법)	8
	기타	4
	소 계(적용특례 6개)	70
(129개)	합 계(적용특례 65개)	676